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탁송품 운송업자도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확대하고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92조, 94조)
할당관세,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전에는 납세자가 주무부처 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까지 제출 허용함.
- 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외대상 축소(안제141조의2제1항)
관세 등 체납세금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2년

- 1 -

이내에 미납된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다.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 요건 규정(안 제157의2)

탁송품 운송업자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휴대품 유치사유 구체화(안 제219조)

여행자휴대품 중 유치 대상인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함.

마.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규정(안 제231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정함.

바.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등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5)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200만원 이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내면세점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7.~1.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없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채납처분이”를 “강제징수가”로, “채납처분을 유예받”을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 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채납처분절차”를 “강제징수절차”로 한다.

제1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7항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납세고지하여”를 “납부고지하여”로 한다.

제1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의3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1조의3제2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8제3항”을 “제

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의4제1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제11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2조의5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전단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납세고지를”을 각각 “납부고지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고, 제4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채납처분의 유예)”를 “(압류·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채납처분”을 각각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채납처분”을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의 예”를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압류 해제”의 예”로, “채납처분을 중지”를 “압

류를 해제”로 한다.

제56조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으로, “같은 법 제9조제3항”을 “같은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0조제3호 중 “건품”을 각각 “건본품”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14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frac{B}{A + B}$
A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 31일 당시의 체납액		
B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제141조의4제3항 전단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로, “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4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채납처분을”을 각각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141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심의·결정”을 “의결·결정”으로 하고,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사항”을 “심의 및 의결사항(법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 중 “심의”를 “심의 및 의결(법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장 제1절의 제목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개항의 지정)”을 “(국제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항(이하 “개항”)”을 “국제항(이하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국제항명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북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제155조제2항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155조의2의 제목 “(개항의 지정요건 등)”을 “(국제항의 지정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외국무역선”을 각각 “국제무역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개항시설”을 “국제항시설”로, “개항에”를 “국제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156조의 제목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1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용품목록”을 “선박용품목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용품”을 “선박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하인·송하”를 “물품수신인·물품발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기용품목록”을 “항공기용품목록”으로,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57조의2의 제목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5조제2항”을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법 제136조제3항”으로 한다.

제160조의 제목 “(외국기착의 보고)”를 “(외국 임시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착항”을 “해당 항만 또는 공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착항”을 “해당 항만 또는 공항”으로 한다.

2. 임시정박한 항만 또는 임시착륙한 공항명
4. 임시정박 또는 착륙 사유

제16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한다.

제16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개항”을 각각 “국제항”으로 한다.

제166조의 제목 “(선용품 또는 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을 “(선박용

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167조제1항제3호 중 “내항선·내항기·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168조의2의 제목 “(환승전용내항기의 관리)”를 “(환승전용 국내운항기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승전용내항기”를 “환승전용 국내운항기”로 한다.

제176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재화물목록
제183조의 제목 “(건품반출의 허가신청)”을 “(건본품반출의 허가신청)”으로 한다.

제185조제1항제5호 중 “건품”을 “건본품”으로 한다.

제187조의4제1항제4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92조의2제1항제3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2.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적하목록상”을 “적재화물목록상”으로 한다.

제2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39조제2항제1호 중 “송하인 및 수하인”을 “물품발송인 및 물품수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가보호조치”를 각각 “임시보호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보호조치 기간”을 “임시보호조치 기간”으로, “가보호조치 개시일”을 “임시보호조치 개시일”로 한다.

제241조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

– 16 –

- 17 -

- 18 -

- 19 -

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8제3항을 준용한다. ④ (생략) 제31조의4(관세부와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2. (생략)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품물	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③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4(관세부와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2. (현행과 같음)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품물
---	---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 <u>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21조의2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11. 「 <u>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33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생 략)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 <u>국세기본법</u> 」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 <u>관세납부대행기관</u>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 「 <u>국제징수법</u> 」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③・④(생략)	③・④(현행과 같음)
제34조(세액의 결정) ① ~ ③(생략)	제34조(세액의 결정)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u>납세고지</u>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u>납세고지</u> 를 여러 건 하여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u>납세고지</u> 를 할 수 있다.	④ ----- ----- ----- ----- ----- <u>납부고지</u> ----- ----- ----- ----- ----- <u>납부고지</u> ----- -- <u>납부고지</u> --
⑤(생략)	⑤(현행과 같음)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결정) ① ~ ②(생략)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결정)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 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 ----- ----- ----- -----
1.(생략)	1.(현행과 같음)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세조세조정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2. ----- -- 「국세조세조정법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율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통지서의 교부, <u>납세고지</u>, 경정에 대한 재경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 <u>납</u> <u>부고지</u>----- ----- ----- -----.
제36조(납세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법 제47조제1항 또는 법 제270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u>납세고지서</u>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u>납부고지</u>) ----- ----- ----- ----- ----- ----- ----- <u>납부고지서</u> ----- ----- ----- ----- ----- -----.
제40조(채납처분의 유예) ① 채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제40조(<u>압류·매각의 유예</u>) ① ----- -----

<u>채납처분</u>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3. <u>채납처분</u>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생략)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u>채납처분</u>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u>채납처분</u>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u>채납처분</u>을 유예한 채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생략) 3. <u>채납처분</u>의 유예기간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	<u>압류 또는 매각</u>----- ----- ----- ----- 1. 2. (현행과 같음) 3. <u>압류 또는 매각</u>----- ----- 4. (현행과 같음) ② ----- -- <u>압류 또는 매각</u>-----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압류 또는 매각</u>----- ----- ----- ----- 1. <u>압류 또는 매각</u>----- ----- 2. (현행과 같음) 3. <u>압류 또는 매각</u>--- ⑤ ----- -----	항에 따라 <u>채납처분</u>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41조(채납자료의 제공 등)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u>채납처분</u>이 유예된 경우 ② ~ ⑦ (생략) 제45조(관세채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관세채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채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u>채납처분</u>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 <u>압류 또는 매각</u>----- ----- ----- ----- 제41조(채납자료의 제공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압류 또는 매각</u>-----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관세채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 ----- ----- ----- ----- ----- 1.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 <u>제4호의 사유에 의한 압류 해제</u>의 예----- ----- ----- ----- <u>압류를 해제</u> ----- -----
--	--	--	--

2. 삭제 3. (생략) ② (생략)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② (생략)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④ (생략) 제92조(할당관세) ① ~ ③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 <u>같은 법 제9조제4항</u> ----- ----- ----- ④ (현행과 같음) 제92조(할당관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⑤ ~ ⑧ (생략)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의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와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u>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u>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 ----- ----- ----- ----- ----- ----- ----- ----- 다만,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u>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u>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와 사용 등의 금지기간) -----
---	--	--	---

제83조제2항·법 제88조제2항 또는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와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때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부
 분품 또는 견출인 경우의 사
 후관리기간 : 1년 이내의 기간
 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간. 다만, 원재료·부
 분품 또는 견출 등이 특정용
 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
 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
 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
 所に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
 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보관되
 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모

[illegible]

1.·2. (현행과 같음)

3. 기본품

두 사용된 날까지로 한다.

4. (생략)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①
세관장은 제126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법 제39
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
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후인 것의 납세고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41조의2(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

4. (현행과 같음)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 고지) ①

----- 납부 고지 -----

②-----

-- 남부고지-----.

③ _____

 납부고지
 _____.

제141조의2(고액·상습채납자 명
단공개) ①-----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frac{\text{최근 2년 간의 제남액 납부비율}}{\text{A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2월 31일 당시의 제남액}} = \frac{\text{B}}{\text{A + B}}$$

B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2. 3. (생략)

② · ③ (생략)

제141조의4(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 ② (생략)

③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중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본다.

제141조의8(출국금지 등의 요청)

2.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1조의4(납세증명서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세징수
법」 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
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 「국
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제9
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 --- 「국세징수
법 시행령」 제93조 --- 관할
세무서장-----

제141조의8(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 5. (생략)

6. 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에 따른 제3자와 싸고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illegible]

1. ~ 5. (현행과 같음)

6. ----- 「국세징수법」 제25조-----

②

강제징수를

제141조의9(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① (생략)	제141조의9(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u>채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u>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u>강제징수를</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5조(심사청구) ① (생략)	제145조(심사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u>심의·결정</u>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② ----- ----- ----- ----- <u>의결·결정</u> ----- ----- ----- -----

록 요구할 수 있다.	-----.
③법 제119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 ----- -----.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u>납부통지서</u> 를 받은 자	1. ----- <u>납부고지서</u> -----
2.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u>납부통지서</u> 를 받은 자	2. ----- ----- ----- <u>납부고지서</u>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u>심의사항</u>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 -- <u>심의 및 의결사항(법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48조(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u>심의</u> 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8조(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 ----- <u>심의 및 의결(법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u>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u>제1절 개항</u>	<u>제1절 국제항</u>								
제155조(개항의 지정) ①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①----- ----- <u>국제항(이하 “국제항”</u> ----- -----.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개항</th></tr> <tr> <td>항구</td><td>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통영항, 삼천포항, 강승포항, 포항, 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주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양공항</td></tr> </table>	구분	개항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통영항, 삼천포항, 강승포항, 포항, 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주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양공항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국제항</th></tr> <tr> <td>항구</td><td>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통영항, 삼천포항, 강승포항, 포항, 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주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양공항</td></tr> </table>	구분	국제항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통영항, 삼천포항, 강승포항, 포항, 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주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양공항
구분	개항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통영항, 삼천포항, 강승포항, 포항, 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주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양공항								
구분	국제항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통영항, 삼천포항, 강승포항, 포항, 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주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양공항								
②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의한 범위로 한다.	② <u>국제항</u> ----- ----- ----- -----.								
제155조의2(개항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u>개항</u> 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① ----- <u>국제항</u> -----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의하여 <u>외국무역선</u> (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1. ----- ----- <u>국제무역선</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	3. -----								

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항구의 경우: <u>외국무역선</u> 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나. ----- <u>국제무역선</u> ----- ----- ----- -----
② 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u>개항</u> 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u>개항시설</u> 의 관리기관의 장과 <u>개항</u> 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 ----- <u>국제항</u> ----- -----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u>개항</u> 의 운영자에게 개선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 ----- ----- <u>국제항</u> ----- ----- -----.

제156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①법 제1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 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외국무 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항행의 편의도모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u> 1. ~ 5. (생 략) ② (생 략)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 한 출입허가) ① ----- ----- 국제항----- ----- ----- ----- ----- 국제무 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 항) ① (생 략) ②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u>선 용품목록</u>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u>선용품</u> 의 품명·수량 및 가 격 ③ ~ ⑤ (생 략) ⑥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u>적하목록</u>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 항) ① (현행과 같음) ②----- <u>선 박용품목록</u> ----- ----- 1. (현행과 같음) 2. <u>선박용품</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u>적재화물목록</u> ----- -----.

1. (생 략) 2. 품명 및 <u>수하인·송하인</u> 3. (생 략) ⑦ (생 략) ⑧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 공기의 <u>기용품목록</u> ,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u>적하목록</u> 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7조의2(<u>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u>) 법 제1 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160조(<u>외국기착의 보고</u>) ①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 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u>기착항명</u> 3. <u>기착항에 머무른 기간</u>	1. (현행과 같음) 2. ----- <u>물품수신인·물품발 송인</u> -----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 <u>항공기용품목록</u> ----- ----- -- <u>적재화물목록</u> ----- ----- 제157조의2(<u>적재화물목록을 제출 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u>)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법 제 136조제3항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60조(<u>외국 임시정박 또는 착륙 의 보고</u>) ①----- ----- ----- 1. (현행과 같음) 2. <u>임시정박한 항만 또는 임시 착륙한 공항명</u> 3. <u>해당 항만 또는 공항</u> ----- -----
---	---

4. <u>기착사유</u> 5. <u>기착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u> ② (생 략)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 청) ① ~ ④ (생 략) ⑤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u>외국무역선 또는 외 국무역기에</u> 내국물품을 적재하 거나 <u>내항선 또는 내항기에</u> 외 국물품을 적재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 는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u>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장소 및 일 시</u> 2. ~ 5. (생 략) 제166조(<u>선용품 또는 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u>) ① <u>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u> 물품을 하역	4. <u>임시정박 또는 착륙 사유</u> 5. <u>해당 항만 또는 공항</u> ----- ② (현행과 같음)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 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국제무역선 또는 국제 무역기</u> ----- --- <u>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 기</u> ----- 1. ~ 4. (현행과 같음)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u>국제항</u> ----- ----- ----- ----- ----- 1. <u>국제항</u> ----- -- 2. ~ 5. (현행과 같음) 제166조(<u>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 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u>) ① <u>국 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u> ----
---	---

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 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⑧ (생 략)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 환) ①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 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 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2. (생 략) 3. <u>내항선·내항기·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u> 의 해당 여 부 4. (생 략) ② (생 략) 제168조의2(<u>환승전용내항기의 관 리</u>)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 환)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u>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국 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u>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2(<u>환승전용 국내운항기 의 관리</u>) ----- ----- ----- ----- -----.
---	--

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외국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u> 에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단 속상 애로가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 <u>국제무역선 또는 국제 무역기</u> ----- ----- ----- ----- -----.	① ~ ⑤ (생 략)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생 략)	②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현행과 같음)
③법 제2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 ----- ----- -----.	1.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	②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2. 3. (생 략)	1. ----- 물품
11. <u>적하목록상</u>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11. <u>적채화물목록상</u> ----- ----- ----- -----	③ (생 략)	발송인 및 물품수신인-----
12. 13. (생 략)	12. 13.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	2.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신 설>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④-----

관보류등이 법원의 <u>가보호조치</u> 에 의하여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u>임시보호조치</u> ----- ----- ----- ----- -----.	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부담한다.	
1. 법원에서 <u>가보호조치</u> 기간을 명시한 경우 : 그 마지막 날	1. ----- <u>임시보호조치</u> -----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경우에는 당초의 수출입신고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삭 제>
2. 법원에서 <u>가보호조치</u>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u>가보호조치</u> 개시일부터 31일	2. ----- <u>임시보호조치</u> 기간----- <u>임시보호조치</u> 개시일-----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⑤ ⑥ (생 략)	⑤ ⑥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생 략)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 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6조의3제7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 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 ----- ----- -----.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245조(반입명령) ① ~ ④ (생 략)	제245조(반입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물품을 반	<삭 제>		

② ~ ⑥ (생 략) <신 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 업자간 협력 등) 법 제254조의2 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 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u>밀수출입 정보교환 및 법에 따른 정보제공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 한 사항</u> 2. <u>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 선 협약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u> 3. <u>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한 사항</u>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 제25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세관 이 발행하는 <u>납세고지서</u> 로써 이 에 같음한다.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 법 제327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u>납부고지서</u> ----- -----.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 -----

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 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 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 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u>전자우편주소[법 제327조제5 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 리설비(이하 “전산처리설비” 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용자 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u> 4. 5.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u>납부서 · 납세고지서 · 환급통지서</u>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 류로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u>납부서 · 납세고지 서 · 환급통지서</u>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 는 경우에는 <u>전산처리설비</u> 에 저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전자우편주소, 국가관세종합 정보망의 전자사서함, 연계정 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 자송달을 받을 곳</u>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납부서</u> ----- <u>· 납부고지서 · 환급통지서</u> --- ----- -----. ④ ----- ----- <u>납부서 · 납부고지 서 · 환급통지서</u> ----- ----- ----- <u>국가관세종합</u>
--	--

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하여 야 한다. ⑤ (생 략)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⑧ (생 략)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에 따라 제155조 제1항에 따른 <u>개항</u> (보세구역 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 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 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 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⑩ · ⑪ (생 략)	<u>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 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u> ----- -----. ⑤ (현행과 같음)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u>국제항</u> ----- ----- ----- ----- ----- ----- ----- ----- -----. ⑩ · ⑪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